

##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18조의3(수입신고) 법 제19조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”이란 원목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말한다.

1. 제재목
2. 방부목재
3. 난연목재
4. 집성재
5. 합판
6. 목재펠릿

제18조의4(수입검사 등) ① 법 제19조의3제1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
1. 한국임업진흥원
2. 국내 또는 원산국의 목재수확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생산(이하 “합법벌채”라 한다)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체계 등을 갖춘 다음 각 목의 기관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
  - 가. 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)
  - 나. 연구기관

②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판매정지·반송 또는 폐기 명령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안전성 위해 목재제품”은 “합법벌채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”으로, “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”는 “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업자”로 본다.